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약등의 등록사항 변경 시 미신고 및 거짓신고
행위 등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24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약등의 등록사항 변경 시 미신고 및 거짓신고 행위 등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40조 제2호의2 및 제5호 신설 등)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16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2. 30.

다.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약 품목·원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및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原劑)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농약등의 등록사항 변경 시 미신고 및 거짓신고 행위 등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40조 제2호의2 및 제5호 신설 등)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제2항¹⁾(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및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 ----- -----.
1. 제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삭 제>

① 농약 품목 등록사항 중 일반사항 변경 미신고 시 벌금 과태료 전환

현행법 제8조제1항2)에 따라 농약 제조업자가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품목3)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동법 제13조제2항4)에 따라 품목의 등록사항 중 신청인의 성명·주소와 같은 ‘일반사항’5) 변경 시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2. 품목의 제조 과정
3.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4. 약효의 보증기간
5. 제조장의 소재지
6. 원제공급처
7. 상표명

2)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

(예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16.6%), 에틸포메이트 훈증제(99%), 나프로파마이드 입제(5%), 나프로파마이드 입제(2.5%)

4) 「농약관리법」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수출농약(제8조의2제1항후단), 원제(제16조제4항), 수입 농약·원제(제17조제3항), 농약활용기자재(제17조의2제4항)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 농약의 품목 변경신고(제13조제2항)를 준용

- 5) ①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②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③ 품목의 제조처방과 같은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는 2025년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아래 18개 유형의 경미한 의무위반⁶⁾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 「법령입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 ①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 ②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영업 개시신고, 변경신고, 승계신고, 휴·폐업신고, 행위신고)
- ③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 위반 등)
- ④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⑤ (조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설명·보고 명령(요구) 불응, 출석이나 진술·답변 요구 불응)
- ⑥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유사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⑧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보수교육, 연수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 ⑨ (강제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⑩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 ⑫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

6) 통지·표시·조사·검사 등 「법령입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

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⑬ **(인력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⑭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⑮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⑯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⑰ **(토지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⑱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검직금지 등

※ 음영: 개정안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개정안은 이러한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등에 관한 형벌규정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① 농약과 관련한 본질적 사항의 변경이 아닌,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점,

②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규율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첫째, 현행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7)에 명시된 변경신고 대상인 ‘일반사항’ 내에서도 각 항목별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일괄적 제재 완화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일반사항 중 신청인의 성명·주소,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제조장의 소재지, 원제공급처, 상표명 등의 변경은 농약의 본질적 효능과는 무관한 단순 행정적 정보로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음.

반면, 일반사항에 포함된 ‘품목의 제조 과정’ 및 ‘약효의 보증기간’은 농약의 화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국민 건강·안전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농약과 유사한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 등을 규율하는 유사 입법례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2. 품목의 제조 과정
3.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4. 약효의 보증기간
5. 제조장의 소재지
6. 원제공급처
7. 상표명

【 유사 입법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u>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u>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	1. 신고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u>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u>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u>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u>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따라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합리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유사 입법례와 더불어, 농약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괄 완화 여부 및 적정 수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적용상의 혼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 제13조제1항8)에 따라, 농약 관련 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함.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상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의무 위반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임.⁹⁾

즉, 농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의무 위반으로 보아 제32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임.

8) 「농약관리법」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품목의 변경등록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2. 품목의 제조처방

9) 「농약관리법」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한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제1항10)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일반사항”에 “약효의 보증기간”과 “상표명”이 있는데, 상기 법 제20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도 “약효의 보증기간”과 “농약등의 명칭”이 있어 이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구 분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법 제20조제1항
내 용	농약 품목 등록사항 중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일반적 사항	농약 등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2. 품목의 제조 과정 3.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4. 약효의 보증기간 5. 제조장의 소재지 6. 원제공급처 7. 상표명	1. 농약등의 명칭 2. 유효성분별 함유량 3. 적용 대상 병해충명 4. 약효 보증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반 시 벌칙	벌금 2백만원(개정안 과태료 5백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 「농약관리법」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2. 품목의 제조 과정
3.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4. **약효의 보증기간**
5. 제조장의 소재지
6. 원제공급처
7. **상표명**

따라서, “약효의 보증기간”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위반으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반면,

“약효의 보증기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유사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내 처벌수위가 현저히 상이하게 됨.

즉, 약효의 보증기간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속기관이 ① 일반사항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2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②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무엇을 적용할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농약 등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농약등(농약 + 농약활용기자재)의 명칭”을 “농약의 상표명”으로 해석할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농약관리법 집행 시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의 보다 면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벌금 과태료 전환

현행법 제25조제1항¹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약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에게 농약 및 원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해당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른 관리 사항 보고 의무를 불이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기보다는, 행정청의 원활한 감독 업무를 저해하는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는 형벌(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기 보고 의무 위반행위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여 규율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은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1) 「농약관리법」

제25조(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품방제업자등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 제25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품방제업자등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농약이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물질인 만큼 행정관청이 그 관리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농약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제고하려는 데 있음.

이러한 동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미보고 및 거짓 보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벌금)에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하는 조치가 자칫 행정 감독의 규범력을 떨어뜨려 허위 보고나 위반행위 은폐에 대한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나아가 농약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화학물질 등에 대한 보고 의무 불이행 관련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벌)이 아닌, 과태료(행정질서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u>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u>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u>검사하게 할 수 있다.</u>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8. 3. 20.>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5. 삭제 <2018. 3. 20.> 6.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u>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제1항 <u>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u>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u>

따라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유사 입법례와, 농약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완화 여부 및 적정 수준 등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부칙에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²⁾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 시 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³⁾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2)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4)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⁵⁾.

15)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